[업무보고]



제277회 임시회

『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』 민간위탁(재위탁) 보고

2020. 9.



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보고

제출년월일: 2020. 9.

제 출 자:대구광역시장

1. 보고이유

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 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~제12조
 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~제6조
 -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)
 -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 -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

○ 필 요 성

- 대구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"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"를 2012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
-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,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,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,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등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

나. 설치·운영 개요

○ 명 칭 :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

○ 사업기간 : 연중

○ 위 치 : 대구시 관내

○ 구성인력 : 30명

- 센터장(비상근) 1, 부센터장 1, 팀장 4, 팀원 24

○ 조직구성

- 팀구성 : 정신건강증진팀, 기회조정팀, 교육홍보팀, 위기대응팀, 응급개입팀

- 위원회 :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

○ 사 업 비 : 1,377백만원정도(기금831, 시비546)

*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 지원기준에 따라 변동가능

다. 위탁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2021. 1. 1 ~ 2023년 12. 31.(3년)
- 수탁기관 선정 : 공모 및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선정
- 위탁 주요사무
 - 대구광역시 중·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
 - 대구광역시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 -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사업의 연구·자문·기획·평가 수행
 - 정신보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
 -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
 -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
 - 정신보건사업 등의 현황 파악 및 통계조사 관리
 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
 -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관련사업

3. 붙임자료

- 가. 관계법령 1부.
- 나.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계획 1부

붙임 1 관계 법 령

1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 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-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- 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 -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 -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 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 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 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3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- 제4조(위탁사무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
 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- 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- 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 - 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- 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 - 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 - 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제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 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- 3. 경제적 효율성
 -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-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 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- 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 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 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 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 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"보호의무자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- ⑦ 시·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⑧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5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(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· 운영)

-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"광역정신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광역정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- ③ 광역정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.
 - 1. 대구광역시 중·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
 - 2. 대구광역시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 - 3.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사업의 연구·자문·기획·평가 수행
 - 4. 정신보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
 - 5.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
 - 6.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
 - 7. 정신보건사업 등의 현황 파악 및 통계조사 관리
 - 8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
 - 9.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관련사업
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- ⑥ 시장은 광역정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6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

제8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

-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자살관련 상담
 - 2.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
 - 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 - 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 - 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 - 6.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
 - ②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붙임 2

재위탁 계획서

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

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(광역자살예방센터)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('20. 12. 31.)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~제12조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~제6조
-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-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

II 추진방향

-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공정성, 투명성 제고
-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
-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

Ⅲ 센터 현황

- **위탁기간**: '18. 1. 1. ~ '20. 12. 31.(3년)
- **작탁기관**: 학교법인 선목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
- **의 위 치**: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(라파엘관 5층, 343.84㎡)

■ 조직 및 인력

○ 인 원: **30명**(센터장 1, 부센터장 1, 팀장 4, 팀원 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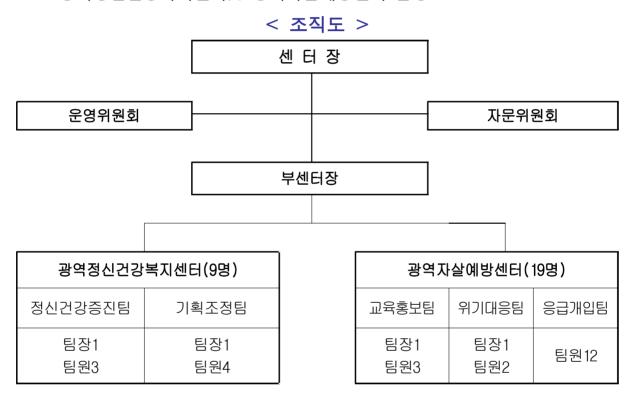
- 센터장 : 이종훈 (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/비상근)

- 센터장 1명, 부센터장 1명, 팀장 4명, 팀원 24명

○ 팀구성: 5개팀(정신건강증진팀, 기획조정팀, 교육홍보팀, 위기대응팀, 응급개입팀)

O 위원회 : 2개(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)

※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內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: '16.3. ~



■ **사업예산**(′20년 기준)

○ 총예산 : 1,377백만원

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: 856백만원(기50%, 시50%)

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: 285백만원(시100%)

- 응급개입팀 운영 : 236백만원(기50%, 시50%)

■ 위탁연혁

차수(기간)	1차(2012.1.~2014.12)	2차(2015.1.~2017.12)	3차(2018.1.~2020.12)
수탁기관	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	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	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

IV

위탁계획

■ 위탁개요

O 위탁범위: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전반

○ 위탁기간 : '21. 1. 1. ~ '23. 12. 31.(3년)

O 위탁방법 :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

O 선정방법: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선정

○ **위탁예산** : 1,377백만원정도(기831, 시546)

※ '20년 예산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 지원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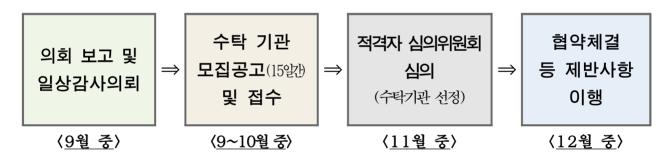
■ 위탁사무

- O 대구광역시 중·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
- O 대구광역시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
-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사업의 연구·자문·기획·평가 수행
- O 정신보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
-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
- O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
- O 정신보건사업 등의 현황 파악 및 통계조사 관리
- O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
- 자살위기상담, 응급개입, 사례관리 등 정신과적 응급대응 업무
- O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
- 〇 市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응급대응협의체 운영 지원 등
-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련사업

■ 위탁조건

- O 매년 정액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외에 추가 지원 없이 대구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(광역자살예방센터)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
- O (시설요건)
 -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, 민간건물 임대도 가능
 - 임대 시 임대보증금은 수탁기관에서 부담
 - 사무실, 상담실, 회의실, 교육실, 당직실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쾌적한 330㎡ 이상의 공간

■ 위탁절차



* 응모 기관이 없거나, 1개 기간이 응모할 경우 재공고, 재공고 시에도 2개 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 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9조 준용)

♡ 수탁기관 선정

■ 모집개요

○ 공고기가 : '20. 9. 21. ~ 10. 5. (15일간) * 일정 변경 피

* 응모기관이 없거나, 1개 기관이 응모할 경우 재공고(5일 이상)

○ 공고방법 :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

O 접수방법: 방문접수 원칙, 팩스 및 우편(택배포함) 접수 불가

O 접 수 처 :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

O 제출서류: 대구광역시 수탁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

가. 대구광역시 사무수탁신청서

나. 서약서

다.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(요약서 별도 작성)

라. 기관(법인)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허가증사본

마. 센터장(예정자) 이력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사본, 재직증명서

바. 기관(법인)소개서(연혁, 설립목적, 조직, 사업영역 등)

사.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고용 승계 확약서

아. PT발표자료 * 제출 이후 서류 내용변경 및 반환불가

O 제출방법 : 사무수탁 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A4용지 1권 책자 10부, 요약본(20매이내) 10부, PT발표자료 10부를 제본하여 제출(한글파일 및 USB 별도제출)

■ 응모자격

- 공고일 현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
- O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,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자
- 「정신건강복지법」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,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「고등교육법 |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■ **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・운영**: 별도 계획 수립

○ 구 성 : 6 ~ 9인 이내(위원장 포함)

O 위 원 장 :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

O 위 원 : 보건의료분야 대학교수,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

O 위촉방법 : 공개모집 및 추천

전정기준: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선정

- 신청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, 업무의 수행능력, 관련 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- O 수탁기관의 운영 및 재정능력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전문역량,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실적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 배점·심사
- O 다수 공모일 경우
 -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한 1개 기관 선정
 - 심사위원별 채점,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,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높은 단체 선정
 -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 가능
- 재공고후에도 단독 공모일 경우 : 해당기관 적격여부 심사
- **선정방법** :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- 🔲 선정발표 :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서면으로 개별통보

■ 협약체결

O 위·수탁기관 간의 협약(계약) 체결에 관한 사항 일상감사 요청 및 협약서 공증

VI

향후계획

O 민간위탁 추진계획 시의회 보고 및 일상감사 요청 : 2020. 9월

O 심사위원 및 수탁기관 모집공고 : 2020. 10월

○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·수탁기관 선정 : 2020. 11월

○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20. 12월